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인구감소권역 신설 등 》

■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26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제2216626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법률의 목적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역할 재정립 (안 제1조 및 제21조)	3
나. 인구감소권역 신설 및 지원 (안 제4조, 제6조, 제10조 및 제16조)	6

I.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제2216626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배준영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2. 5.

다. 회 부 일 : 2026. 2. 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수도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 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수도권 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제정 후 40여 년 동안 ‘수도권 과밀 억제’라는 목적만을 유지한 채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에 ‘인구감소 대응,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속 가능 성장’으로 그 목적을 재정립하여 수도권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권역의 구분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여 인구감소권역을 신설하고, 해당 권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로 인

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등).

3. 검토의견

가. 법률의 목적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역할 재정립(안 제1조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수도권의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도권의</u> ----- ----- <u>지속가능하고 균형</u> ----- -----.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수도권의 정비 및 <u>건전한</u>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 <u>지역 간 균형</u> ----- ----- ----- ----- -----.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 규정에 ‘수도권의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안 제1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수도권 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규정하고 있음¹⁾.

그러나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도의 북부와 남부 간 인구 및 산업시설에 차이가 있고²⁾,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수도권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수도권 내 개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개정안은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과 증가하는 지역이 혼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 과밀억제 문제를 넘어서 수도권 내 인구 및 산업의 불균형 등 전반적인 인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의 목적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역할을 확장하려는 입법으로 이해됨.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8조(총량규제),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안, 제2202126호)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성장관리권역 내 인구,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성장관리권역 내 인구,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현황 】

구 분	북부 지역	남부지역	남북지역간 격차
인구 수(2023년)	1,861,000명	5,813,000명	3,952,000명
사업체 수(2023년)	214,825개	649,167개	434,342개
종사자 수(2023년)	748,000명	2,827,000명	2,079,000명

※ 자료: 국토교통부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인구·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와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균형발전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으며, 현재도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따라서, 개정안은 수도권 내 균형발전의 필요성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인구감소권역 신설 및 지원(안 제4조, 제6조, 제10조 및 제 16조)

현행	개정안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u>수도권의</u>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 ----- <u>수도권 일부 지역의</u> ----- ----- ----- ----- -----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8. 제6조제1항제4호의 <u>인구감소권역</u> <u>지원 등에 관한 사항</u>
8. 제1호부터 <u>제7호까지의</u>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 <u>제8호까지의</u> ----- ----- -----
9. (생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u>인구감소권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u>

현행	개정안
② 과밀억제권역, <u>성장관리권역</u> 및 <u>자연보전권역</u>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u>성장관리권역</u>에 조성한 대지(垡地)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그 대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한다. <u><후단 신설></u>	<u>른 인구감소관심지역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의 우려가 있어 적절하게 지원·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u> ② -----<u>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및 인구감소권역</u>-----. 제10조(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 ----- ----- -----<u>성장관리권역 및 인구감소권역</u>----- -----. 제16조(부담금의 배분) ----- ----- ----- ----- ----- ----- --. <u>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에 귀속된 부담금이 해당 시·도 내 인구감소권역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경과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을 입안하여야 함.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목적을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인구 및 산업 집중 억제로 규정하고(안 제4조제1항), 현행법 제6조에 따른 권역에 ‘인구감소권역’을 추가하며(안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시 인구감소권역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여 입안하도록 하고(안 제4조제1항), 현행법 제12조에 따라 징수된 과밀부담금 중 시·도에 귀속된 부담금이 해당 시·도 내 인구감소권역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① 인구감소권역 신설(안 제6조 및 제10조)

현행법은 1980년대 초반 수도권으로의 급격한 인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행과 같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규제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³⁾.

그러나, 수도권 내에서 과밀억제권역의 인구는 감소한 반면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내 인구는 증가하였고 수도권 내 일부 지역⁴⁾은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가평군 총 4곳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구감소지역⁵⁾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역에 기반한 일률적인 수도권 정비 정책에서 벗어나 개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비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⁶⁾.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수도권 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⁷⁾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의 우려가 있어 적절하게 지원·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인구감소권역으로 새롭게 도입하여, 해당 권역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정비계획에 인구감소권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수도권 내 차등적인 지원 및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서도 동일권역 내 지역 특성 등 차이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차등관리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 가시화 등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권역체제 변경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언급된 바 있음.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 중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현황 】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인구감소지역	-	◦ 인천 강화군 ◦ 인천 옹진군 ◦ 경기 연천군	◦ 경기 가평군
인구감소관심지역	◦ 인천 동구	◦ 경기 동두천시 ◦ 경기 포천시	-

※ 자료: 행정안전부 고시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현행법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는 공통적으로 인구집중유발시설⁸⁾에 대한 총량 제한 규제⁹⁾가 적용되고 대규모개발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¹⁰⁾, 각 권역별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

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규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총허용량과 그 산출 근거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및 인구집중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통 문제 및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저감방안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설·증설 및 공업지역 지정 등에 대한 규제가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음¹¹⁾).

【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규제 】

적용 대상		규제 내용	인구감소권역 적용 여부
공통	수도권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 제한	○
	대규모 개발사업	수도권 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허가등을 위해, 개발계획에 대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와 협의 또는 승인	○
과밀억제권역		①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용도변경 원칙적으로 금지 ② 공업지역 지정 또는 그 허가등을 원칙적으로 금지	X
성장관리권역		①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허가등 제한 ②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이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함	X
자연보전권역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금지 ②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그 허가등 금지	X

1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권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① 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적용받으나, 종전 3개 권역에 적용되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 등에 관한 규제는 적용받지 않게 되고, ② 안 제4조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에 인구감소권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며, ③ 안 제10조에 따라 인구감소권역으로 인구집중유발시설 이전 시 우선 분양 혜택¹²⁾도 부여됨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인구감소권역으로의 이전이 촉진되어 수도권 내 균형발전이라는 개정안의 입법취지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와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을 고려할 때, 수도권 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섬 발전 촉진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고려할

1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안, 제2216626호)

제10조(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성장관리권역 및 인구감소권역에 조성한 대지(垓地)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그 대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필요가 있음.

둘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이 인구감소권역으로 지정되어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 가능해질 경우,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이전이 활성화되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배치될 우려가 있고,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 개정안의 정책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① 인구감소지역인 강화·옹진·가평·연천 지역은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여 현행법령 하에서도 인구 및 산업 유치가 충분히 가능하고, ② 현재 적용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량에 충분한 여유가 있어 별도의 권역 설정 없이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며, ③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인구는 수도권 인구의 1.8%에 불과함에도 그 면적은 수도권 면적의 25.6%를 차지하여 별도 권역을 설정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안정적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부칙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을 입안하도록 경과규정을 둔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에 인구감소권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도록 기한을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계획 수립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② 과밀부담금을 통한 인구감소권역 지원(안 제16조)

현행법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하며¹³⁾,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되고, 나머지 절반은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됨¹⁴⁾.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②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해산하면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③ 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連帶) 납부 의무와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개정안은 현행법 제16조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부담금이 인구감소권역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지방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성격이 강한바, 수도권에서 징수된 부담금이 수도권 내 낙후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에 따라 부담금의 시·도 귀속분을 인구감소권역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할 경우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내 인구감소권역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 수도권 내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6조는 인구감소권역 신설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인구감소권역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579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한다.

참고 1

수도권 규제 주요내용

※ 자료: 국토교통부

- 수도권을 **3개 권역**(과밀·성장·자연)으로 구분, 권역별 목적에 맞춰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개발사업의 입지·총량을 차등 규제

* (시설) 공장·대학·대형건축물·공공청사 연수시설, (개발사업) 택지·도시개발·공업용지·관광지 조성



구 분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행정구역	서울 등 16개시	동두천 등 14개시, 1개군	이천 등 6개시, 2개군
면 적 (11,881km ²)	2,017km ² (17.0%)	6,034km ² (50.8%)	3,830km ² (32.2%)
인 구 (26,081천명)	18,397천명 (70.5%)	6,386천명 (24.5%)	1,299천명 (5.0%)
지정취지	과밀 방지 공장이전촉진	이전기능 수용 계획적산업관리	한강수계보호 및 녹지보전

- ① (공장) 3개 권역 모두 3년 단위 **공장총량제**(^{24~26}2,838천m²)를 적용, 산단·공업지역 등 **계획입지는 권역별 차등 관리체계*** 적용

* (과밀억제) 계획입지 신규 지정 금지, (성장관리) 3년 마다 계획입지 물량(^{24~26}12,660천m²) 공급, (자연보전) 공업용지 조성면적 상한(6만m²) 제한

- ② (대학) 4년제 대학의 신설과 지방으로부터 이전을 금지하되, 권역 간 이전은 일부*만 제한하며, 입학 정원 총량(11.7만)도 규제

* (금지 대상) 서울 및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

- ③ (개발사업) 권역별 개발사업 면적 규모 제한 내에서 심의를 거쳐 허용, 수계 등 환경 보전이 중요한 자연권역은 대규모 개발 제한

구 분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택지조성	■ 100만m ² 이상 심의 후 가능	도시	■ 10만m ² 이상
		비도시	■ 10만~50만m ²
도시개발·지역개발	■ 100만m ² 이상 심의 후 가능	도시	■ 3만~6만m ² 이하, 10만m ² 이상
		비도시	■ 3만~6만m ² 이하, 10만~50만m ²
공업용지 조성	■ 30만m ² 이상 심의 후 가능	■ 3만~6만m ² 이하	
관광지 조성	■ 10만m ² 이상 심의 후 가능	■ 3만m ² 이상	

- ④ (기타) 공공청사와 연수시설 신·증축은 심의*를 거쳐 허용하며, 서울시에 대형건축물 및 공공청사 신·증축 시 **과밀부담금**** 부과

* 금지대상 : (공공청사) 청단위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연수시설) 과밀권역 입지

** (산정기준) 표준건축비의 5~10%, (감면대상) 국가·지자체 건축물, 주택, 직장어린이집 등